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항·비행장·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공항시설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55호, 2025. 1. 31. 공포, 2025. 8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공항·비행장·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연체금 징수 방식 및 연체금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등과 의견수렴 완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4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려는 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,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된 사용료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, 연체이자율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인 경우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, 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

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5조의4(사용료의 징수 등) ①</u> <u>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연</u> <u>체금을 징수하려는 자는 15일</u> <u>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</u> <u>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지</u> <u>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</u> <u>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</u> <u>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</u> <u>를 고지하되, 마지막 고지에 의</u> <u>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</u> <u>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</u> <u>도록 하여야 하며, 이후 1년에</u> <u>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</u> <u>된 사용료에 공항시설 또는 비</u> <u>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</u> <u>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</u> <u>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</u> <u>로 하며, 연체이자율은 공항시</u> <u>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</u> <u>영하는 자가 법 제2조제11호에</u> <u>따른 공항운영자인 경우 이사회</u> <u>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</u>

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, 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189 (044) 201 - 4063